

# 대 구 지 방 법 원

## 제 11 형 사 부

### 판 결

사 건 2025고합3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이덕영 (○○○○○○○-○○○○○○○○), \*\*  
주거 경산시 ○○○○○○  
등록기준지 영주시 ○○○○○○  
검 사 서○○(기소), 김○○, 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김○○, 임○○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  
판 결 선 고 2025. 12. 10.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하양읍 ○○○ ○○에 있는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박○○은 피고인의 의과대학교 스승이자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 박○○의 아

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경 피고인의 초대로 위 ○○○○○○○○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새로 설립한 ○○○○○○ 운영으로 인해 ○○○○○○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26.부터 ○○○○○○ 제2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게 하던 중, 2022. 12. 말경부터 2023. 2. 초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의사는 명의상 두 병원의 대표를 맡을 수 없으니 아버님이 ○○○○○○의원 대표 원장을 형식적으로 맡아 주면 함께 진료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 형식적으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양도양수하는 외관을 갖추는게 좋겠다. 아버님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받은 돈을 송금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외관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2. 13.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못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의 사위이자 피고인의 친구이기도 하며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소속 의사인 박○○을 만나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으면 나중에 못 갚아도 기금에서 책임을 진다. 아버님은 자리에 앉아만 계셔도 월급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운영하겠다. 2년 뒤에 리○요양병원이 정상에 오르면 ○○○○○○를 다시 인수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박○식은 그 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년 이전 자신이 운영하던 ○○○○○○를 위 박○○을 비롯한 다른 의사들에게 금 8억 원에 양도하려고 하였지만 의사들이 그 가격으로 양수하려고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 ○○○○○○를 위 금액에 양도할 의도가 생겼고, 피고인이 새로 운영하게 된 ○○○○병원이 정상화되더라도 ○○○○○○를 다시 피해자로부터

양수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3. 2. 20.경 경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도 형식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 병원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피해자, 임차보증금을 1억 원, 월차임을 500만 원(부가세 별도), 임차 기간을 2023. 2. 23.부터 2028.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구은행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2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63810104\*\*\*\*\*)로 금 1억 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3010295\*\*\*\*\*)로 금 8억 원, 합계금 9억 원을 위 ○○○○○○ 양도양수대금 및 ○○○○○○ 병원의 건물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위와 같이 ○○○○○○를 양수하며 그에 따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로부터 2023. 3.경부터 2024. 1.경까지 위 ○○○○○○의 월차임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 합계금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9억 4,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9억 4,9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및 위 ○○○○○○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실제로 이루어져 그 양도양수대금, 건물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년 뒤에 리○요양병원이 정상화되면 ○○○○○○를 다시 인수할 것이라고 약속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기망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

###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1. 31. ○○○○○○의 인테리어 관련 시설, 의료소모품, 의약품, 의료장비 일체를 포함한 ○○○○○○의 영업권 일체를 대금 8억 원(초기 계약금 1억 4,000만 원, 잔금 매월 1,500만 원 44회 분할상환)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 양도양수관련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 가 동대구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이를 공증하였다(증거기록 1권 237~242면).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3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나, 작성일자,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임대차기간 등이 다르고,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연번	작성일자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임대차기간
1	2023. 1. 31.	200,000,000원	7,575,717원 (부가세 별도)	2023. 2. 1. ~ 2024. 1. 31.
2	2023. 2. 20.	100,000,000원	5,000,000원 (부가세 별도)	2022. 2. 22. ~ 2028. 2. 28.
3	2023. 2. 20.	100,000,000원	5,500,000원 (부가세 별도)	2023. 2. 22. ~ 2025. 2. 28.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위인 박○○식은 2023. 2. 13.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못 부근 식당에 만난 이후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일시	발신자	수신자	내용
2023. 2. 13. 22:32	박○○	피고인	잘 들어가고 있나? 아버님 통화드렸고 계획하

			던대로 진행하시도록 말씀드렸다. 내가 너무 과한 걱정을 하는 것일 수 있어 미안한데 친구도 내 입장을 이해하리라 믿는다.^.^ 모쪼로 아버지 걱정하실 일 없도록 잘 부탁한다.
2023. 2. 14. 01:15	박○○	피고인	대출 받아서 그걸 빌려주는 형태는 너무 비정상적인 것 같아 그냥 계획하던대로 아버님이 인수하시도록 하고 추후 리○요양병원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친구가 다시 인수하는 형태가 좋을 것 같다고 의견 나누었다!
2023. 2. 14. 18:15	피고인	박○○	(2023. 2. 13.자 메시지에 대한 답장) 사랑하는 친구야!! 고맙고~~ 친구도, 어른들도 신경 안쓰시게 할거다~~
2023. 2. 14. 18:16	피고인	박○○	(2023. 2. 14.자 메시지에 대한 답장) 응 그랬나!!? 점심때 모시고 식사하면서 어제 박교수와 마무리한 내용을 보고?드렸었다~~^

라. ○○○○○○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2023. 2. 22.까지 피고인이었다가 2023. 2. 23.부터 피해자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은 2023. 3. 1. ○○○○○○를 사업장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23. 10. 1. 상실하였다.

마. 피해자는 2023. 2. 24. 신용보증기금 대구서지점에 방문하여 창업자금 신용보증상담을 하면서 인수 권리금 8억 원, 임차보증금 2억 원 등 총 소요자금을 18억 원으로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신용보증약정서에 자필로 ‘약정서 설명 듣고 사본 받았음’을 기재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은 2023. 2. 28. 보증서를 아이엠뱅크에 발급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2023. 2. 28. 아이엠뱅크 중구청지점에서 대출금 9억 원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아이엠뱅크 계좌(계좌번호 504-10-467\*\*\*\*, 이하 ‘이 사건 사업자계좌’라 한다)에 대출금 9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피해자는 2023. 5. 31. 아이엠뱅크 중구청지점에 ‘인수대금(권리금 및 시설장비 일체) 8억 원, 건물 임차보증금 1억 원’을 기재한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였다.

#### 4. 판단

#####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형식적 계약인지(소극)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를 계속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한 이후에도 ○○○○○○ 건물 외관 및 병원 내부에 ‘대표 원장 이덕영’이라는 표기가 그대로 사용된 점, ② 피고인의 배우자가 2023. 9.경까지 이 사건 사업자계좌의 은행 보안카드(OTP)를 보관하면서 피고인의 월 급여 1,000만 원, 월 임대료 550만 원(부가세 포함)을 비롯한 병원 운영비 이체 등의 업무를 처리해온 점, ③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피해자는 만 85세의 고령인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형식적 계약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경위

및 이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통해 피해자가 ○○○○○○를 인수하여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해자의 아들 박○○에게 2023. 9. 19.경 입출금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처가 위 병원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자계좌의 은행 보안카드(OTP)를 보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입출금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관한 2023. 1. 31.자 약정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공증인 앞에서 자인하였고, 의사 창업자금 대출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아이엠뱅크 지점에 각 방문하여 신용보증약정서, 여신거래 약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면서 자필로 그 내용을 인지하였음을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비록 고령이기는 하나 2022. 12. 26.경부터 ○○○○○○에서 진료를 보는 등 이 사건 무렵 정상적인 직업 및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고, 과거 병원 건물주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진료행위를 한 의료범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아 혐의없음 내사종결 된 피해자의 특수한 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컴퓨터로 작성한 메모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1권 409~414면, 증인 박○○ 녹취서 37면)도 이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자계좌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입출금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였고, 위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 3장을 소지하면서 2023. 4. 11. 500만 원, 2023. 4. 12. 500만 원을 출금하는 등 2023. 3.경부터 2023. 9.경까지 63회에 걸쳐 합계 63,933,357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해당 시기 병원장으로서 수입 및 개인비용 지출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전에 약정하거나 사후에 승인받은

사실은 없다), 2023. 9. 23.경 박○○을 ○○○○○○ 비상근의사로 등록하고, 2023. 9. 27.경 피고인에게 ‘10월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18~427면, 증인 박○국 녹취서 42면, 증인 박○○자 녹취서 19면).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를 운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들이다.

4) 박○○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2023. 2. 14.자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를 인수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5. 3. 12. 1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24가소1614호 판결, 증거기록 3권 1540~1542면).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재인수를 약정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지(소극)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를 다시 피해자로부터 양수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2년 뒤에 리○요양병원이 정상에 오르면 다시 인수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양도양수대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장래에 ○○○○○○의 재인수 내지 대표자 명의를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가 병원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관한 문서에는 피고인이 장래에 ○○○○○○를 재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 논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리○요양병원이 정상화되면 다시 ○○○○○○를 인수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으나 그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그것이 계약의 조건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박○○ 녹취서 40~41면).

2) 박○○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년이라고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전이라도 피해자가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제자 된 도리로서 ○○○○○○를 원상 복귀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박○○ 녹취서 11면), 위와 같은 박○○의 법정진술과 피고인과 박○○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관련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자의 손해나 불편함이 없도록 피고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것을 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의 재인수에 관하여 그 시기와 조건, 인수금액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 2023. 3. 25.경부터 2023. 4. 1.까지 ○○○○○○의 직원 4명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2023. 4. 초경 ○○○○○○ 건물 외부 리모델링 공사 견적 및 디자인 시안을 의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며, 2023. 4. 8. 건물 외부 리모델링 비용 등 명목으로 이 사건 사업자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정산 및 의료

기기 처분 등에 관한 박○○의 요청에 협조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양도양수대금 8억 원 등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리○요양병원이 정상화되는 등 ○○○○○○ 재인수 약정 내지 그러한 논의의 전제가 된 조건이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피고인이 처음부터 ○○○○○○를 다시 양수할 생각이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철	_____
	판사	김수철	_____
	판사	이보경	_____